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8. 10. 1.(수), 10:00

2. 장 소 :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2008-32-132)(비공개)

2)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2008-32-133)

-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번호이동성)에 따라 음성서비스 간 경쟁촉진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인터넷전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08년 10월하순까지 제도시행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되, 인터넷전화의 의미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는 것도 고려하도록 함.

※ 주요내용

- 가. 번호이동성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존 시내전화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까지 확대
- 나.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통신, 위치 변경시 위치정보 등록, 정전시 통화 등 필요한 정보를 홍보하여야 함
- 다. 사업자가 번호이동 서비스 제공시 통화권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함

3) (주)베스트제이와이의 원링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08-32-134)

-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으로부터 (주)베스트제이와이가 전국대표번호 및 통신장비 운영 소홀로 인해 협력사가 원링스팸을 이용해 부당 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주)베스트제이와이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과징금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아울러 통신장비를 불법 조작해 이용자를 기만하여 부당 과금되도록한 협력사인 슬론텔레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 8. 13. ~ 8. 20. 기간 동안 베스트제이와이와 협력사인 슬론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이용실태 등에 대하여 관련 전산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 베스트제이와이의 협력사인 슬론텔레콤이 '08.7.1~30 기간동안 원링스팸을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온 이용자에게 총 379,307건을 부당 과금(약 3,400만원)한 사실을 확인함
- 이에 대해 베스트제이와이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 베스트제이와이가 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영을 소홀히 하여 협력사가 통신장비를 불법 조작해 부당 과금하는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4) LG데이콤-세종텔레콤 전기통신설비제공 협정체결에 관한 제정 건 (2008-32-135)

-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LG데이콤)과 피신청인(세종텔레콤) 상호간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이용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원안 의결함.

5) (주)경남일보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소유금지 위반행위에 관한 건 (2008-32-136)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소유를 금지한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주)경남일보에 대하여, 방송법 제8조제1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원안대로 의결함.

<의결주문> 피심인은 2008.12.31.까지 자신의 특수관계자인 김홍치 소유의 진주문화방송(주) 주식 전부(8,000주)를 처분하도록 하거나, 김홍치와 방송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6) (주)쌍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소유금지 위반행위에 관한 건 (2008-32-137)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주)쌍용에 대하여, 방송법 제14조제6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원안대로 의결함.

<의결주문> 피심인은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자신이 소유한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13,871주를 처분하거나, 방송법 제1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법인의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7) (주)강원민방의 방송법 제8조제3항 위반행위에 관한 건(2008-32-138)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소유를 금지한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주)강원민방에 대하여, 방송법 제19조에 의한 과징금 3,500만원 부과를 의결함.

8)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주)강원방송(2008-32-139~140)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송·선로설비 적합검사 확인의무를 위반한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및 (주)강원방송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각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원안 의결함.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 티브로드전주방송 등 7개사 (2008-32-141)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주)티브로드전주방송 등 7개사의 주전송장치 이전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변경허가를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내용

상호/법인명	변경사항	변경신청내용	비 고
(주)티브로드전주방송	주전송장치이전	설치장소 이전	사옥이전
(주)티브로드 중부방송	시설변경	장비교체(신호처리기)	노후장비 교체
씨엔엠서초케이블티브이	시설변경	장비교체(신호처리기)	노후장비 교체
(주)동서디지털방송	시설변경	장비교체(변조기,신호처리기)	노후장비 교체
JCN울산중앙방송	시설변경	장비교체(변조기)	노후장비 교체
(주)강원방송	시설변경	장비증설(변조기)	디지털 채널증설
(주)한국케이블티브이 나라방송	운용채널변경	채널변경	DMC 공동사용에 따른 채널변경

10)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의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2008-32-142)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의 신설 PPV상품 이용요금 승인 신청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 극장종영 후 DVD 시장 출시 이전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PPV 상품인 프리미엄 스카이초이스 신설(편당 3,500원)

1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주)티캐스트 등 4개사(2008-32-143)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등록신청한 (주)티캐스트, 디에스아이비(주), 씨제이엔지씨코리아(주), (주)온캐스트솔루션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건에 대해 원안 의결함.

※ 주요내용

법 인 명	채 널 명	방송분야
(주)티캐스트	스크린(Screen)	영화,드라마(텔레비전)
	패션앤(FashionN)	여성(텔레비전)
	뷰(View)	다큐,리얼리티쇼(텔레비전)
디에스아이비(주)	히어로티비(Hero TV)	영화(텔레비전)
씨제이엔지씨코리아(주)	National Geographic Channel DMB	교양,다큐(텔레비전)
(주)온캐스트솔루션	OS 최신가요 등 15개채널	음악(라디오)

사. 보고사항

1)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설치규정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김중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08.8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3개 산하기관이 1개 기관으로 통합 추진됨에 따라 통합기관 명칭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 추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률개정 등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함

※ 주요내용

- 통합대상기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통합기관 명칭으로 (가칭)한국네트워크진흥원으로 명명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통합기관 설치규정을 마련
- 유사 기능 통합, 관리 기능 축소 등을 통해 조직 경영 효율성을 향상
- 주요 추진일정으로 '08.10월 경영효율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08.10월중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08년말까지 법률개정을 추진

2)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으로부터 인터넷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시민단체·언론기관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인터넷윤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간 자율정화활동을 주도할 「인터넷 윤리포럼」을 구성·운영하기로 함.

※ 주요내용

- 초·중교생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가이드라인, 교재개발 및 윤리교육 실시
- 언론사 공조를 통한 기획연재물·기고문 게재 등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학술행사·세미나 개최 등 민간차원의 자율정화활동 지원 강화 등

아. 기 타

1)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10월 10일(금)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16:55)

※ 11:00 정회, 11:20 속개, 12:05 정회, 15:20 속개